

2040 서울도시기본계획(안) 의견청취안

의안 번호	20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입안이유

- 가.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 규정에 따라,
- 나. 「2030 서울도시기본계획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대체하는 「2040 서울도시기본계획(안)」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2040 서울의 미래상
- 나. 6대 공간계획
- 다.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
- 라. 부문별 전략계획
- 마. 권역별 계획 등

3. 추진경위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1조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 장영준 (☎ 2133-8323)